

[ ]징계처분  
[ ]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 
[ ]징계부가금 감면처분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소속	직위(직급)	성명
주문	징계 종류,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	
이유	불임의 징계 의결서,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(징계처분등 전에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) 사본과 같음	

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처분권자

직인

불임: 징계 의결서,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(징계처분등 전에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)의 사본

유의사항

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